

의안번호	제2828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고성시니어클럽(노인일자리 지원기관) 운영 사무의
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8. 27.

고성시니어클럽(노인일자리 지원기관)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282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7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성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. 12. 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위탁근거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
- 다.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7조의4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)
- 라. 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」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
- 마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시설명: 고성시니어클럽(노인일자리 지원기관)
- 나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위치	운영인력	운영비	비고
고성시니어클럽	고성읍 송학로 47-3, 2층	6명	330,000천 원	

다.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

- 노인일자리지원기관(고성시니어클럽) 운영 전반
- 노인일자리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사업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설운영(부대시설 및 작업장 포함)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 승계 운영
- 기타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위탁기간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간)

마. 선정방식: 공개모집 공고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

바. 신청자격: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(단위: 천 원)

시설명	계	인건비	운영비		비고
			공공운영비	사무관리비	
고성 시니어 클럽	330,000	292,135	12,450	25,415	
	산출내역	· 인건비: 6명×12월(사회보험, 퇴직적립금 등) · 공공운영비: 공과금 전기, 상하수도, 통신요금 등 · 사무관리비:사무용품, 회의, 교육비 등			

4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: 적정

가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- 노인일자리 지원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탁자 명의 및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민간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

- 사무 자체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,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

나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공공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
- 관계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
- 노인의 복지 욕구를 전문적·즉각적으로 대응하고, 외부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

다.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- 민간자원(법인전입금, 후원금 등) 재원 조달 방법이 다양하여 직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임

라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- 노인복지분야 관련하여 경험이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, 효율성 도모 가능
- 민간의 복지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

마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(성과평가)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
-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 성과평가 가능

바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위·수탁 협약 및 관련 법령·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업무 수행
- 자체평가, 성과평가, 수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기관의 회계의 투명성 확보

사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-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, 공정한 경쟁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-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법인 및 시설을 지도·감독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 및 취소 등의 조치 가능

아. 그 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

- 고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기관의 위탁운영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이 크므로 위탁 운영이 필요

5. 기대효과: 전문성,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,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 향상 도모

6. 향후 추진계획

- 가.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: 2024. 9.
- 나.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: 2024. 10.
- 다. 수탁기관 선정: 2024. 10
- 라. 위탁 계약 체결 및 제반 준비: 2024. 11.
- 마. 위탁운영: 2025. 1. 1.

7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【붙임 1】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□ 노인복지법

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 <개

정 2011. 4. 7.>

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4. 7.>
- ③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4. 7.>
-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 6. 4.>

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17조의4(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위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>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·위탁조건·수탁기관 선정방법·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>

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
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

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, 검침, 주차시설,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이하 “재계약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 사무 내용
4. 민간위탁 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 기간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